

부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 의 제)

□ 제안이유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 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함.(안 제2조)
-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과 전입금 등으로 함.(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자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시민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	○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됨.
○ 개발부담금과의 차이는 ?	○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폭만큼 산출하는 비용으로써 성격이 다름.
○ 지자체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70/100은 지자체 수입금이며 30/100은 국가에 귀속됨.
○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 규모는 ?	○ 약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촉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	○ 관련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조속 설치하여야 됨.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528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출년월일 : 2006. 6.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8호, 2006. 1. 11.공포, 2006. 7. 12.시행) 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함.(안 제2조)
- 나.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 다.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과 전입금 등으로 함.(안 제4조)
- 라. 특별회계의 자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정비팀장	박동정
	담 당 자	최종섭(☎320-2583)